

인천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76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0. 7.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4. 접수 제425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승 계 참 가 취 지

###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20. 7.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4. 접수 제425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승계참가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 이 유

###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E에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있어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별지목록-

## 부 동 산 의 표 시

### 1동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빌라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제3층  호 59.91 평방미터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 177 평방미터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77 분의 22.45

가. 이에 원고는 소외 E에게 위 채무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재산을 조사하던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외 망 G (소외 E의 부)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외 망 G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2020. 07. 26.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09. 24. 접수 제 425691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제 5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이는, 소외 망 G의 사망 당시 법적 상속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을 하여야 하나 법정상속인 중 소외 E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시에는 채권자 및 여타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등의 우려가 있어 상속인 중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이며, 이에 피고는 소외 E의 모 친으로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입니다.

##### 5.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권

가.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51797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 29119 판결)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다3253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소외 E는 여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약속 및 채권자회사의 수차 변제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에 의하여 처분될 것을 알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 6. 원고회사의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소외 E에 대한 상속지분을 전부 자신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이는 채무변제 및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E과 공모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 하여 무자력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이는 당연히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부 말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피고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은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부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 참 가 이 유

원고는 원고송계참가인에게 2021. 1. 22.자로 위 원인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E에게 양도통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원고의 송계참가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